

4 (第119回-文教保社第3次)

(參照)

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(뒤에 실음)

○委員長 李英順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文化觀光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, 산회를 선포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14時 26分 散會)

○出席委員

李英順	金星煥	張鎮國
金成奎	羅鍾文	徐興善
劉俊相	李康珍	李東泰
李禮子	林浩植	崔明玉
許光泰	洪承采	吉基演
李海植		

○專門委員

尹炳國

○出席公務員

서울特別市教育廳
企劃管理室長 宋永植
教育支援局長 金南一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○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2. 제안사유

○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6216호 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6730호 2000.2.28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, 동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던 것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 변경(안 제1조).
- 종전 “정기회”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“정례회”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2조제2항).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2000.2.28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법(2000.1.28)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은 “공무원복무규정 제9조”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”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
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○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2. 제안사유

○교육부의 시·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(2000. 3. 1)됨에 따라 동 규정 시행규칙으로 감축된 서울시교육청 총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총정원을 91명 감축함(총정원 : 7,369명 ⇒ 7,278명)

4. 검토의견

○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1.28 개정)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교육부의 시·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감축된 서울시교육청의 총정원을 7,369명에서 91명이 감축된 7,278명으로 조

4 (第119回-文教保社第3次)

(參照)

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(뒤에 실음)

○委員長 李英順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文化觀光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, 산회를 선포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14時 26分 散會)

○出席委員

李英順	金星煥	張鎮國
金成奎	羅鍾文	徐興善
劉俊相	李康珍	李東泰
李禮子	林浩植	崔明玉
許光泰	洪承采	吉基演
李海植		

○專門委員

尹炳國

○出席公務員

서울特別市教育廳
企劃管理室長 宋永植
教育支援局長 金南一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○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2. 제안사유

○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6216호 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6730호 2000.2.28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, 동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던 것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 변경(안 제1조).
- 종전 “정기회”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“정례회”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2조제2항).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2000.2.28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법(2000.1.28)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은 “공무원복무규정 제9조”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”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
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○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2. 제안사유

○교육부의 시·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(2000. 3. 1)됨에 따라 동 규정 시행규칙으로 감축된 서울시교육청 총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총정원을 91명 감축함(총정원 : 7,369명 ⇒ 7,278명)

4. 검토의견

○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1.28 개정)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교육부의 시·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감축된 서울시교육청의 총정원을 7,369명에서 91명이 감축된 7,278명으로 조